

장애인 특별공급(분양) 신청 구비서류(2022)

유형	구비서류	구비기준	유의사항	필수여부
작성 서식	<서식1> 장애인 특별 공급(분양) 알선 신청서	장애인 신청자	• 장애인 본인 명의로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의 서명 또는 인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7항에 의거, 지적,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명의 신청 가능하나, 장애인 기준 서류 구비 및 점수 산정함.	○
	<서식2>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장애인 신청자	• 각 평점요소별 배점사항을 증빙서류를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신청자 및 주민센터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제출 당시 점수는 확정이 아니며, 담당 공무원의 배점내용 검증 후 직권 조정될 수 있음.	○
	<서식3> 무주택서약서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확인 후 신청자의 서명 또는 인	○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애인 신청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미동의시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서식5> 위임장	장애인 신청자 및 수임자	• 수임자는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기준에 준함. • 신청행위만 대리하며, 신청서류는 장애인 명의로 작성 *위임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각각의 신분증 사본(필수) 첨부 ※ 위임장을 작성했다라도 신청자의 신분증, 도장을 필수적으로 지참하여야 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류 발급에 대한 위임장을 추가적으로 징구할 수 있음(관련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 권한 없는 자에게 위임하는 등 불법 행위 발견시 해당 신청건 무효 처리될 수 있음	
	<서식6>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	장애인 신청자	•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발표일 전날 15:00까지 신청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 • 여러 아파트에 기관추천 신청한 경우 중복추천 배제 ※ 하나의 아파트에 추천되는 즉시 나머지 아파트는 기관추천 제외, 단, 기관추천 선정 공고일 전날 15:00까지 포기서 제출 시 가능 ※ 기존에는 두 접수 건의 기관추천결과 공고일이 달라 중복신청이 가능했으나 시행사의 공급일정이 변동되어 두 접수건의 기관추천결과 공고일이 동일해진 경우, 선접수건이 선정되면 후접수건은 자동으로 무효 처리됨. 단, 선접수건에 대한 포기서를 기한 내 제출 시 후접수건 선정 유효.	

※ 상기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유형	구비서류	구비기준	유의사항	필수여부
증빙서류	[증빙1]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장애인 신청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세대원 수 점수산정에 포함되는 세대분리한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세대원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추가 제출	○
	[증빙2] 주민등록표초본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장애인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증빙3] 가족관계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장애인 신청자	세대분리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제출	
	[증빙4] 장애인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장애인 신청자 및 해당자	- 장애인 신청자 : 본인 명의 장애인 증명서 반드시 제출 - 신청자 외에 점수산정에 포함되는 장애인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 추가 제출	
	[증빙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미과세 증명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가. 과세내역 있는 경우 - 전 세대원 신분증과 도장 지참하여 발급 요청 - 최초 장애등록일부터 최근 10년 내 전국 단위로 조회하여 세대원 전원의 주택분 재산세 납부내역 확인 -ex) 장애등록 '15년, 최근 과세 '13년이면 '15년~현재 과세내역 제출(다른 세대원도 '15년부터~현재까지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조회시 재산세 납부 내역 있는 지역으로 조회 발급 나. 과세내역 없는 경우 * 재산세납부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 '위와 같이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라고 기재된 전국 단위로 조회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제출	○
	[증빙6]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소 or 인터넷 발급		-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에 한해 제출 (미과세자는 제출 불필요) - 주택 매각 시, '갑구', '등기접수일' 확인 (매각일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 주택을 여러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증빙7] 건축물관리대장 *시군 건축부서 발급		-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에 한해 제출 (미과세자는 제출 불필요) - 주택 매각 시, 건축물관리대장 상 '처리일' 확인 - 배점기준표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정확한 매각 일자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 -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무주택기간 등이 충분히 소멸되면 제출 불필요 - 공부 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유주택으로 봄	
	[증빙8] 무허가건물확인서 *시군 건축부서 발급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으로 해당 주택이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공문)등을 제출하여야 인정	
	[증빙9] 그외무주택입증서류 *개별 발급(본인 가증 책임)		분양권 및 입주권 등 처분 관련 서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의해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 상기 증빙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포털, 인터넷 등기소 등에서 발급 가능(일부는 발급 불가)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전국 단위 발급을 위하여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인터넷 발급 시 전국 단위 발급이 불가함.)

장애인 특별공급(분양) 알선 신청서

신청인 (장애인 명의로만 신청가능)	성명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명의로 신청한 경우 ☐ * 지적,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명의 신청 가능하나, 장애인 기준 서류 구비 및 점수 산정함.					
	주 소	인천광역시			연락처	
					비상연락처	
장애 유형	(장애 등록일 :)			장애정도		
세대구성원 수 (신청인 포함, 동거인 미포함)	명 ※배점기준표 작성요령 참고할것			세대원 중 장애인 (신청인 미포함)	명	
				65세이상 장애인 (신청인 미포함)	명	
무 주 택 세대구성 기 간	년 ※ 무주택 세대구성 기간이란? : 아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 → 아래 날짜중 가장 최근인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기간 산정 ①최초 장애등록일 이후(취소 후 재등록된 경우 재등록일) ②장애인이 만19세가 경과한 이후 ③주택을 소유하였던 세대구성원(본인 포함)이 그 주택을 최종 매도한 시점이후 ※ 구비서류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 미과세 증명서(전국으로 조화),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무허가건물확인서, 그 외 무주택 입증 서류 등					
신 청 구 분	아파트명			신청타입		
인천시 연속 거주기간	년 ※ 만19세 이상 + 장애등록일 이후부터 해당 아파트 접수 당일까지 산정			최종전입일 : _____ (최소 인천시 3개월이상 연속 거주자)		
특 기 사 항	※ 배우자의 세대분리,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소유, 유주택자이나 무주택 인정 사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등)가 있을 시 기재					
대리신청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 위임장 및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 각각 필요					
유의사항	○ 상기 신청 내용은 서류로 확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으며, 실제보다 짧게 표기된 기재 사항은 신청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그대로 인정되며, 유리하게 작성된 사항은 직권으로 조정하고, 고의적으로 허위 작성된 신청서는 해당 신청을 무효처리 할 수 있음.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하여 평생 1회에 한정됨. (단, 탈락 시 재신청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과정에서 공급일정 및 배정물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공급내역이 변동되더라도 기관추천 접수일자가 종결된 건에 대해 추가수정 접수가 불가함. ○ 신청자의 착오에 의해 잘못 신청된 경우에도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 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특별공급 '기관추천 추천자명단 공개일'이 동일한 경우 중복하여 신청 불가함. ○ 기관추천자로 선정(예비자 불포함)될 경우, 청약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인천시 '기관추천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접수분에 대하여 재추천이 제한됨.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기관추천과 무관하게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음.					
신청자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주택의 기관추천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2022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귀하						

(필독)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작성 요령

- ‘성명’, ‘주민등록번호’ 란은 신청자 장애인 본인만 기재가능(다른 가족 명의 신청 불가)
(단, 지적,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무주택인 배우자 명의로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배우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장애인 기준 서류 구비 및 점수 산정함.)
- ‘주소’ 란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지 주소지를 도로명 주소 기준으로 상세주소까지 기재하고 ‘비상 연락처’ 란에는 본인이 연락이 안될시 연락 가능한 다른 가족, 지인 등의 휴대폰번호 기재
- ‘장애유형’ 에 본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등록일(취소 후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일) 작성, ‘장애정도’ 란에 본인의 장애정도 기재 (장애인 증명서 상 장애정도 기재)
- ‘세대원 중 장애인(신청자 미포함)’, ‘65세이상 장애인(신청자 미포함)’ 란에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하고 세대원 수에 인정받는 세대원에 한해 기재(예: 장애가 있는 형제는 미포함)
(단, 지적,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무주택인 배우자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본래 기관추천 신청 자격 조건이 있는 장애인은 세대원 중 장애인으로 포함하지 않음.)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세대원 중 장애인(신청자 미포함)’, ‘65세이상 장애인(신청자 미포함)’ 란에 중복하여 각각 기재함.)
- ‘세대구성원 수’ 란에는 본인을 포함하여 세대원 수에 인정받는 인원 기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3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은 ①최초 장애등록일(취소 후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일), ②장애인이 만19세가 경과한 이후, ③주택을 소유하였던 세대구성원(본인 포함)이 그 주택을 최종 매도한 시점이후,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이 몇년 경과했는지 기재 (‘21.1.1.~ ‘22.1.1.이 지나야 1년으로 산정하며, **접수 당일 기준**으로 산정함.)
- ‘아파트명’, ‘신청형별’ 명확히 기재 (블록, 타입 간 중복 신청 절대 불가)
- ‘인천시 연속 거주기간’ 은 최초 장애등록일부터 해당 아파트 **접수 당일 기준**까지 인천시에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이며,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만19세 이상부터 산정함. (인천시 연속 거주기간은 유주택 기간도 포함함.)
(최초 기관추천 접수일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인천 거주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관추천 접수 마감 이후에도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기본자격(수도권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등)은 갖추어야 함.)
- ‘특기사항’ 란에는 특별공급 신청과 관련하여 기타 사항 기재(예: 배우자의 세대분리,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소유, 유주택자이나 무주택 인정 사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등)

서식2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20.7.27부터 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

※ 점수산정 기준일 : 접수 당일

평점요소	배 점 기 준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 수		
장애정도	2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 1~3급)	20	◦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 중증장애인 배려에 따른 경증장애인과 배점 차등 ※ 지적장애·정신장애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 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인 배우자 명의 신청 가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 4~6급)	10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30	10년 경과자	30	◦ 본인거증 책임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 미과세 증명서(전국으로 조회),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무허가건물확인서, 그 외 무주택 입증 서류 등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말함 <u>①최초 장애등록일 이후(장애 취소후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일 이후)</u> <u>②신청인이 만 19세가 넘은 이후</u> <u>③주택을 소유하였던 세대구성원이 그 주택을 매도한 이후</u>	
		9년 경과자	25		
		8년 경과자	20		
		7년 경과자	15		
		6년 경과자	10		
		5년 경과자	7.5		
		4년 경과자	5		
		3년 경과자	3.5		
		2년 경과자	2		
		1년 경과자	1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이상	10	◦ 신청인(장애인) 미포함
			1인	5	
세대원 구성	20	5인 이상		20	◦ 신청인(장애인) 포함, 동거인 미포함 ◦ 무주택 세대구성원 수 (배점기준표 작성요령 4번 참고) - 주택공급신청자(장애인)의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5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	◦ 신청인(장애인) 미포함
인천시 연속 거주기간	15	5년 이상		15	◦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접수당일까지, 계속하여 인천시에서 거주한 기간 ※장애 취소 후 재등록시 재등록시점부터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만19세 이후의 기간만 산입 ※유주택 기간도 산입 ◦ 타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최종 인천시 전입일로부터 산정
		4년		12	
		3년		9	
		2년		6	
		1년		3	
		1년 미만(0)		1	
본인 배점 합계			(점)	◦ 본인 총점 반드시 확인 ◦ 허위작성시 해당 신청 무효처리할수 있음	

신청자 본인은 상기 배점표 확인 및 주택공급안내문을 숙지하였으며, 최종점수에 이의가 없음을 서명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확인자 (동 담당)직원 성명

(서명)

※ 신청자는 상기 밑줄 회색의 내용을 자필로 글로 쓰고 서명하며, 확인자는 점수 정정 시 신청자에게 반드시 안내함.

(필독) 공동주택 특별공급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작성 요령

1. 장애정도 : 해당 아파트 접수일 현재 장애정도(중복장애는 중복합산 기준)

2.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 ①, ②, ③을 모두 포함하는 무주택의 기간

① 최초 장애인등록일 이후(장애인증명서 상 확인가능, 장애취소 후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일 이후)

② 신청자가 만19세가 된 이후(만19세 이후부터 청약자격이 발생)

③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가 된 이후

(주택을 소유하였던 세대구성원이 그 주택을 매도한 이후, 주택 매도시점이 여러 개인 경우 최종 매도시점 이후)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 여부무관, 동거인으로 있던 기간 제외)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원으로 있던 기간 모두 인정

※ 부모 소유 주택에 함께 거주하다 세대분리가 되어도 이전 세대구성원 기간 인정

(예) 85년부터 동일 세대 아버지(유주택, 아들(세대원) → 아들 04년에 장애등록 및 만19세(04년) → 09년에 아들(세대주), 배우자가 세대분리한 경우 세대구성원 기간 13년(17년 현재)

※ 장애인의 직계존속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만60세가 넘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

3.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 신청자 미포함

4. 세대원 구성 :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구성원 수(신청자 포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 포함)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

* 직계비속 : 자기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자녀, 손자, 증손자 등)

5.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 신청자 미포함, 3번 항목과 중복 합산 가능

6. 인천시 연속 거주기간 : 최초 장애등록일부터 해당 아파트 '접수당일' 기준일까지

※ 인천시에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인천시 거주기간은 유주택 기간도 포함)

※ 신청자의 최초 장애인 등록 시점 이후(장애 등록 취소 후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일 이후) 및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만19세 이후부터 산정

(예) 10년전에 장애등록한 신청자가 현재 만25세인 경우, 만19세 이후 기간만 인천시 거주기간으로 인정

※ 타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최종 인천시 전입일'로부터 산정

※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위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타입(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정도 > 세대원중 장애인 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 세대원 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 신청자 연령 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 예 : 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참고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12. 11.>

★ 즉, 공공분양 = 6호 적용 / 공공임대, 공공분양전환임대 = 6호 적용 X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본적)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장애인 특공에 적용 X
-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상기 내용에 따른 무주택 소명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인정.

(기관추천 접수 당시 제출한 서류와 별개로, 시행사 측에서 무주택 소명자료 요구할 시 별도로 제출해야 함.)

* 제6호 : 신청자의 직계존속은 60세넘은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 이때 세대원수 가점 포함

* 제9호 :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만 해당됨으로 ‘특별공급 기관추천’은 해당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소유여부 등 전문적인 질의답변 (☎ 국토부 콜센터 : 1599-0001)

서식3

무주택 서약서

[illegible]

본인은 인천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세대가 전원 무주택이며, 허위사실 확인 및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소유여부 확인, 특별공급 신청서 등과 다르게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취소 또는 특별공급 신청 취소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무주택* 확인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바에 따름.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분양권(18.12.11. 이후 취득)이나 입주권(21.8.12.이후 취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을 소유했으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 기재 바람.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022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귀하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알선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인천광역시는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알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
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u>5년</u>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	주민등록번호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 고유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미동의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u>5년</u>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u>장애명 및 장애정도, 주택 소유 여부, 직계 존/비속 정보 등</u>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u>국토교통부장관,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의뢰 시행주체</u>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u>장애인에 대한 주택 소유 여부 조회, 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관리 등</u>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장애정도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u>5년</u>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 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고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 알선 신청 위임장
(해당자만 작성)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 알선 신청 위임장

위 임 장	위임을 받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계	
	연 락 처		위임사유		
	※ 첨 부 필 수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사본			
	본인의 장애인 특별공급(분양) 알선 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2 년 월 일 위임자: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천광역시청 귀하				

※유의사항

1. 위임범위는 장애인등록 및 심사업무 기준에 준함.(202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①66P 참조)
2. 위임장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신청기간 전에 작성한 위임장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3.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임을 받을 수 없으며, 피위임자(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4.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예: 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 「형법」 제231조 부터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 신청 포기서 (해당자만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천광역시
연락처	
신청주택명	
신청유형	
포기사유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인천시 기관추천 발표이후에 제출한 서약서는 유효하지 않음.

(기관추천 전 날 15:00까지 제출 가능.)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기관추천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